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7일, 이훈기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2025.1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8차 전체회의(2025.1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훈기의원)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가.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 마련

개정안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사회·경제·생물학적 취약계층,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에 취약한 산업·계층·지역 등을 말한다.</u>
<u><신설></u>	<u>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상</u>

13. ~ 17. (생략)	<u>대적으로 더 취약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어린이·장애인과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u> <u>나. 옥외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u> <u>다.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u> 13. ~ 17.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제2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¹⁾, 제38조 국가위기 적응대책 규정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²⁾,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규정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용어가³⁾ 각각 사용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련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
- 1) **법 제2조(정의)**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2) **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3) **법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임.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다시 생물학적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분류는 취약계층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각 분류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취약계층”의 정의를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법 제2조제13호4)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에 서술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도 포함되게 되어 법 적용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사회·경제적·생물학적 취약계층, 취약지역 거주자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 오히려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후위기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력이 낮은 집단과 같이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 반영

개정안은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1조제2항 제3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u>
4. ~ 9. (생략) ③ ~ ⑤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역량 제고 또는 보호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 및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포함 사항]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법 제10조)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법 제38조)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u>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u>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u>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u>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u>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법 제10조)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법 제38조)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 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 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정부가 2023년 4월 채택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의 경우 폭염·한파에 대한 쉼터 확대 등 취약계층 대응체계 강화, 저소득층·고령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기후 적응 대책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역량 제고대책이 보다 비중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역량제고에 관한 내용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법 제38조5)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⁶⁾ 국가 및 시·도 계획보다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

5) 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에 포함된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음.

1. 기후변화 환경보건 서비스 거점 운영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시키는 방안이 정책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안전망 등 대책 마련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안 제43조의2 신설)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안 제43조의3제1항 신설), 국가는 지자체 등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3조의3제3항 신설),

현행법상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인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 정신건강 질환 실태조사 및 영향 연구 등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확대
3. 취약계층(독거노인·저소득층) 집중관리 대책 수립 등 극한 기상현상 대비 취약계층 관리기반 강화
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강화·홍보 등 작업장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신 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u>대책 중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u> <u>④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시행과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u>취약한 계층</u>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 <u>사회·경제적으로</u> <u>취약한</u> <u>계층</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는 있으나⁷⁾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제43조의2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피해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련하는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대상을 선별하고 맞춤형 정책을 세우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3조의3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마련 규정은 현행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특화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호대책 추진, 재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⁸⁾ 및 다양한 지원 사업⁹⁾과 일부 중복

7) 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 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8) 취약계층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음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정적 지원 및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8조제5항¹⁰⁾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지자체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큰 실익이 없으며, 공공요금 인하 등 필요한 대책은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셋째, 안 제47조제1항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대상을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서 “기후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규정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적용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4.9.12., 의안번호 2203992)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연계하여

9) 에너지바우처('25년 예산) 5,014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25년 예산) 1,07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5년 예산) 1,145억원

10) **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심사할 필요가 있음.

라. 부칙 관련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주기, 방법 등에 관한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6개월로 하고(부칙 안 제1조),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대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부칙 안 제2조).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개 정 안
시·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부칙안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문의 수정사항(국가 및 시·도계획이 아닌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해당 내용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라 부칙 조문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